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한국공기청정협회

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단체표준심의위원회 등	—	1
제 3 장 단체표준의 제정 등	—	3
제 4 장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조직 및 직원 등	—	3
제 5 장 단체표준인증	—	6
제 6 장 우수 단체표준제품	—	9
제 7 장 사후관리	—	10
제 8 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	12
제 9 장 보 칙	—	12
단체표준 운영규정	—	58
- SPS-KACA002-132 실내공기청정기		
- SPS-C KACAKARSE 001-7319 실내용 가습기		
- SPS-KACA0020-6631 실내용 제습기		
- SPS-KACA0020-7174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2013년 04월 01일]
[개정:2014년 01월 01일]
[개정:2015년 02월 01일]
[개정:2016년 01월 01일]
[개정:2018년 06월 27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공기청정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정관 제4조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 이라한다.)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및 생산기술의 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 공정화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일반사항은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용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 이라함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하며, 단체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2. 단체표준 제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 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조립 및 설치방법·안전조건·안전성
3. 단체표준 제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포장방법
4. 단체표준 제품의 관한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측정방법
5.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기술에 관한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 수 또는 단위
6. 기타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제 2 장 단체표준심의위원회 등

제3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 구성 등)

- ①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체표준 제품 관련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중견 간부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 시험 검사 기관에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④ 협회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1]서식의 「위촉장」을 수여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⑧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⑩ 심의 내용은 [별지 2]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한다.
- ⑪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으로 한다.
- ⑫ 심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단체표준인증위원회)

- ① 협회에 단체표준제품인증 운영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단체표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단체표준 제품인증의 승인, 확대, 유지,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2.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인증위원회는 제품인증평가 전문가, 기타 품질관리 및 제품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인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인증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심의 내용은 [별지 2]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한다.
- ⑧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으로 한다.
- ⑨ 인증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공평성위원회)

- ① 협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공평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단체표준 공평성위원회(이하 "공평성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공평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인증시스템의 공평성에 대한 방침 및 원칙에 관한 사항
 - 2. 공평성 보장을 위한 조직 및 자원에 대한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3. 인증위원회 심의 내용에 관한사항
 - 가. 제품인증의 승인, 유지, 확장, 정지 및 취소 등에 대한 인증위원회 활동
 - 나. 적절하고 공평한 제품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구
 - 다.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단체의 장에게 보고
 - 4. 기타 제품인증 업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 ③ 공평성위원회는 정부기관, 관련 단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기타 인증제도 운영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공평성위원회 위원은 인증을 받은자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⑤ 공평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 ⑥ 회의는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는 공평성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운영 내용은 [별지 2]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한다.
- ⑨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으로 한다.
- ⑩ 공평성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6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 ① 협회장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따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안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1항에 따른 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3.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협회장은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3]서식의 「단체표준(제정,개정,폐지)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단체표준의 제·개정안
 -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 3. 참고문헌 및 자료
- ⑤ 1항 및 2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1항 및 2항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한다.
- ⑦ 협회장은 자체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⑧ 협회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⑨ 단체표준의 표준번호는 「SPS-고유번호-일련번호」순으로 사무국에서 부여한 번호에 따른다. 다만 협회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는 「KACA - 인증약자 - 제정년도」로 한다. 여기서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s를 의미하고, KACA는 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을 의미한다.
- ⑩ 협회장은 8항에 따라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단체표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 4 장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조직 및 직원 등

제7조 (품질방침 및 품질시스템 등)

- ① 협회장은 협회가 단체표준인증단체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품질방침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5]와 같이 품질방침을 정하고 관련인원이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품인증 및 사후관리 등 단체표준인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보조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한 단체표준별 운영규정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조직 등)

- ①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위한 조직 구조는 인증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의 조직도는 [별표 6] 와 같다.
- ②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설비의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 시험·검사 기관" 이라 한다.)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단체표준인증심사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명은 협회소속 인증심사원이어야 한다.
- ④ 2항에 따른 설비를 직접 운용하는 때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⑤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포함하여 제품인증에 대한 인증시스템의 운영능력에 대하여 신뢰성을 주는 품질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⑥ 인증심사 절차, 인증의 결정,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⑦ 직원은 인증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일체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⑧ 의뢰(신청)자의 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이미 인증된 공급자의 수를 이유로 인증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직원 등)

- ① 제품인증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충분한 직원(인증심사원, 제품검사요원, 책임자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직원"은 계약에 따라 인증기관을 위해 일하는 개인 또는 외부 인력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② 직원은 요구되는 기술적 판단을 내리고, 방침을 수립 및 실행하는 것을 포함 하여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 ③ 평가 및 인증을 유효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직원의 적격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인증책임자와 품질책임자는 제11조 1항에 적합한 하여야 하며, 한국제품인증기구(KAS)의 인증책임자 및 품질책임자 교육을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제10조 1항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3. 제품검사원은 제11조 1항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 ④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의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 ⑤ 직원은 해당법규 및 인증방법과 절차 등 품질시스템 관리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원의 자격 운용 등)

- ① 제8조 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 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에 적합한 자로 협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② 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지 4]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협회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이력서
 2. 1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증명사진 2매
 4. 서약서 [별지 19]서식
- ③ 협회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지 5]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한다.

- ④ 협회장은 심사원의 자격등록 시 서약서 [별지 19]서식을 받아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3. 심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제14조 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5. 인증심사원증을 인증심사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⑤ 협회장은 공정한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이 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업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 시는 2항 내지 3항의 절차를 준용 평가 및 확인 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⑥ 심사원의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⑦ 등록된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개최 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11조 (제품검사원의 자격운용 등)

- ①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원(이하 “검사원” 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요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졸업자로 제품시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② 협회의 협회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정이나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 ③ 제품 검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확과 공정을 기해야 한다.
 2. 판정결과 및 검사기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직속 상위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에 따른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④ 협회장은 제품검사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검사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 (시험 검사의 위탁)

- ① 협회장은 제8조 2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와 관련된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 할 것. 단, 일부 시험·검사 항목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 ② 협회장은 1항에 따라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험설비 임차사용 계약서 또는 시험 검사업무 협력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내부 결재로 갈음한다.

제 5 장 단체표준인증

제13조 (단체표준인증 등)

- ① 단체표준의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협회로부터 단체표준인증을 받을 수 있다.
- ② 협회장은 단체표준인증을 하는 때에는 제14조의 인증심사기준에 정한 인증구분에 따른다.
- ③ 1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제23조 1항에 따라 그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4조 (인증심사기준)

- ① 제13조 1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위한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 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단체표준별 심사기준은 표준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 ② 협회장은 인증심사 기준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 라 한다.)는 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정기검사에는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 (단체표준인증신청)

- ① 제1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6]서식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단체표준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단체표준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17조 1항 1호에 따라 공장심사가 부적합인 경우 1개월간
 2. 제17조 1항 2호에 따라 제품심사가 부적합인 경우 1개월간
 3. 제21조에 따른 인증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4. 제35조 1항 및 제3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 ③ 협회에서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받는다.

제16조 (신청의 철회 및 반려 등)

- ①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 전에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협회장은 관계 서류를 폐기한다. 또한 납부받은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단체표준인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협회장은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제17조 (단체표준 인증심사)

- ① 협회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② 단체표준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구분 한다.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③ 협회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단체표준이 개정되거나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공지하고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공장심사)

- ①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최초인증의 경우 공장심사는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 기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이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③ 공장심사 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4개 품목이상은 3일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공장심사를 위하여 신청업체의 품질시스템을 사전에 문서심사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는 인증신청시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업체의 품질문서(사내규정)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심사에 따른 경비는 제39조 3항에 따른 문서심사 수수료를 인증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규 인증심사(1품목에 한함)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이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제조공장이 다수 일 경우 모든 제조공장에 대해 공장심사를 실시하며, 공장심사에 적합으로 판정 받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 ⑤ 협회는 공장심사에 적합으로 판정 받은 공장에게 [별지 8]서식의 「단체표준 공장 인정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품심사)

- ① 심사원은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를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한 후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료를 운반하게 할 수 있다.
- ② 심사원은 1항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따라 채취한다. 다만, 공장심사에서 보완 사항 발생시 심사원의 판단에 따라 시료 채취를 보류할 수 있다.
-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협회 자체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협회에서 시험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 ④ 협회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심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품검사원 자격에 합당한 자로 하여금 시험을 수행하게 하여 하며, 3항의 외부 시험기관에 시험의뢰시, 시험기관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심사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장심사보고서 및 부적합사항 처리 등)

- ① 심사원은 공장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10]서식에 의한 「보완/부적합보고서」가 포함된 「공장심사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생된 경우 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 내에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심사원의 확인을 받아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완 사항 발생시 : 1개월 이내
 2. 부적합 발생시 : 1개월 이내(재심사는 1개월 이후 가능)

제21조 (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

- ① 협회는 공장심사보고서와 제품심사 결과 및 「보완/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한다.
- ② 협회는 심의 완료 후 시험기관에서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를 인증 받는 자에게 송부한다.
- ③ 단체표준인증이 결정되면 인증 받는 자는 단체표준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별지 20]서식에 따라 인증기관과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별지 7]서식의 「단체표준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장심사의 생략)

-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조설비, 시험검사 설비, 품질관리담당자 지정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료채취 시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품목 중 인증구분이 다른 종류·등급·호칭을 추가 신청한 경우
 2. 제품인증을 신청한 공장이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의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단, 제품심사에서 연속적으로 2회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는 공장심사를 행하여야 함)
-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한 때에는 심사원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3조 (단체표준 인증표시)

- ①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 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인증받은자의 판매처 및 제조처, 제조일
 5. 인증기관명
 6. [별표 2]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진열, 보관 또는 운반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인증제품의 표준 준수

제24조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제23조 1항 6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는 [별표 2]에 따른다.

제25조 (인증서 등의 게시 및 반환)

- ①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장의 사무실에는 발급받은 인증서를, 그 공장의 정문에는 표시판을 각각 게시 할 수 있다.
- ②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표준이 폐지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때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인증서를 협회에 반환 하여야 한다.

제26조 (인증서 및 인증서의 재발급 등)

제13조 1항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2]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ex. 대표자 변경, 제품명 변경 등)
2. 인증서(변경신청 및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된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27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 ① 제1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14]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인증서(당해품목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7]서식의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별지 16]서식의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제28조 (문서의 비치, 보존)

- ①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 ② 협회는 단체표준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각 호의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 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단체표준인증 신청시 제출받은 서류
 2.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관한 서류
 3. 인증심의위원회 평가 서류
 4. 사후관리에 관한 서류
 5.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범위와 인증일자
 6. 기타 단체표준인증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 (보고 등)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4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5호의 경우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 다만, 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중단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4. 제35조에 따라 부적합에 대한 처분에 따른 시정결과
5. [별지 18]서식에 의한 연간 단체표준인증표시품 생산실적 및 품질관리 활동 결과

제 6 장 우수단체표준제품

제30조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

- ① 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따라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협회로부터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5]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에 적합한 경우 [별지 16]서식에 의한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27조의 규정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반환, 재발급 및 지위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 ⑥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발급내용은 [별지 11]서식에 의거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발급대장」에 인증 업체별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⑦ 2항 내지 6항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신청에 준용 한다.
- ⑧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⑨ 8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 1항 및 제3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도 자동 취소되며,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재발급 확인심사가 진행된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단체표준인증 최초인증일자 기준으로 잔여 1년으로 한다.

제31조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절차)

- ① 협회는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원으로 하여금 제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원은 2인 이상으로 하고 심사일수는 1일로 한다.
- ② 제19조의 규정은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을 위한 제품심사절차에 이를 준용 한다. 단, 제품시험의뢰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품 시험비용 및 운반비는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 신청자가 부담한다.
- ③ 심사원은 제품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품시험성적서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후관리

제32조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① 협회는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당해 연도 초에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대상 업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부적합일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부적합 처분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정기심사의 절차 등)

- ① 인증 받은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단체표준별 특성에 적합한 정기심사 기간을 따로 정한다.
 - 1. 공장심사 : 매 3년.
 - 2. 제품심사 : 매 3년.
- ② 1항 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또는 그 공장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인증받은자가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6]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서식에 따라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협회장은 정기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원을 통보해야한다.
- ⑥ 인증 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 폐업, 기타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정기심사를 갈음하고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 ⑦ 정기심사의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4조 (시판품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등)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또는 특별공장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품질저하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 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증받은 제조공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유지를 위하여 협회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9조 1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5. 공장을 이전 및 추가, 변경한 경우
 6. 소비자단체 등 납품수요처인 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결과 부적합인 경우
- ② 시판품 조사 및 특별공장심사는 제19조, 제20조를 준용한다.
- ③ 시판품 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결과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장심사를 받아야 할 자는 협회로 [별지 13]서식에 의거 특별공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처분)

- ① 협회장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및 특별공장심사 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때 등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 받은자에게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이전에 자진반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1항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협회장은 1항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로서 확인하며, 현장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제39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수수료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 ④ 3항에 따라 공장심사결과 처분기간 내에 적합으로 판명된 경우는 처분기간 만료일에 처분을 해제하며,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우는 지체 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 ⑤ 제28조 1항 및 제29조 불이행에 따른 처분은 [별표 3] 처분기준에 따른다.

제36조 (인증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33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제36조 3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처분 중 인증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제37조 (소비자 보호 및 불만처리)

- ① 협회는 단체표준인증 제품을 구입한 소비 자가 제품 품질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가 불만을 초래한 경우, 제조자와 협의하여 그 제품의 수리 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1항의 경우 단체표준 인증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 (인증공장관리기록부)

제32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17]서식 「단체표준인증공장 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제39조 (인증수수료 등)

①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제33조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접수비 : 100,000원
2. 인증심사원 출장비 : [별표 4]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3. 인증심사 수수료
 - 문서심사 수수료 : 150,000원, 단, 제18조 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 공장심사 수수료 : [별표 4]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 제품심사 수수료 : 300,000원
4. 제품시험 수수료 : 단체표준별 제품시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5. 기본 수수료 : 단체표준별 기본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단체표준인증단체 자체점검)

협회장은 단체표준 인증심사, 사후관리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단체표준인증단체 변경사항 보고 등)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양수, 양도 등으로 인한 법적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제 8 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42조 (표준화활동 촉진)

협회장은 단체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전문위원 및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단체표준 개발 및 기술 지원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단체표준의 전환)

- ① 협회장은 단체표준 관련제품의 KS가 특정분야에 국한 되어 사용되거나 KS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 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 할 수 있다.
- ② 1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KS 인증제품은 단체표준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2항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3조 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44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등)

- ①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양성교육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3. 협회에서 주관한 인증관리담당자 교육 이수자

- ② 품질관리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3년마다 한국 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정기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 ③ 협회에서 주관하는 인증관리담당자 교육의 경우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3년마다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실시하는 단체표준 인증관리담당자 정기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제45조 (교육내용 등)

- ①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실시기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 1항 및 2항에 따른다.
- ③ 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 및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협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1. 최고경영자 교육
 - 2.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 3. 단체표준 시험항목 관련 시험요원 교육
 - 4. 인증관리담당자 교육

제46조 (심사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여비)

-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여비는 [별표 4] "가" 규정에 의 한다.
- ② 심사원의 심사비용 및 출장비는 [별표 4] "나"와 "다"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규정 구분)

협회에서 운영하는 단체표준 인증의 특성에 따라 운영규정을 구분한다.